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6509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650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19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7. 10.

판결 선고 2024. 9.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1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1,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4.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28.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3. 30.경 피고의 직원인 'F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매매를 위한 증권정보를 가입금액 3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정보제공 플래티넘 VVIP 서비스 계약[G]'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경까지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내용의 각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각 계약체결 무렵 피고에게 아래 표 '가입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결제수단을 변경하기 위한 결제 취소 및 신규 결제를 반영한 최종적인 지급금액이다).

1	G(H)	2021. 3. 30. ~ 2022. 3. 31.(유료 6개월 + 무료 6개월)	30,000,000
2	I	2021. 4. 1. ~ 2022. 4. 20.(유료 6개월 + 무료 6개월)	20,010,000
3	J	2021. 4. 19. ~ 2022. 4. 20.(유료 6개월 + 무료 6개월)	15,010,000

1	G(H)	2021. 3. 30. ~ 2022. 3. 31.(유료 6개월 + 무료 6개월)	30,000,000
4	K(L)	2021. 6. 18. ~ 2022. 1. 18.(유료 4개월 + 무료 3개월)	9,100,000
5	M	2021. 12. 21. ~ 2022. 3. 22.	10,000,000
합계	84,120,000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5 계약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및 추가적으로 제공된 무료 기간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700%(이 사건 제5계약의 경우 5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책임정찰제 특약(이하 '이 사건 책임정찰제 특약'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5계약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도달하지 못 할 경우 환급 절차(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고 이후 7일 이내 요청)에 따라 요청한 이용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라는 '책임수익 환급증서(이하 '이 사건 책임수익 환급증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해지와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4조(환불규정)

1. 회원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불금액 = 회원 결제금액 - (1일 이용금액 × 서비스 이용일수) - 환불수수료

환불수수료 = 결제금액의 10%

3. 위 계산식에서 서비스 이용일수에는 주말 및 국, 공휴일을 포함한다.
4. 위 계산식에서 1일 이용금액은 결제금액/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금액 전액인 84,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하고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마치 투자자문업자인 것처럼 원고에게 접근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내세워 피고가 추천한 모든 주식이 수익실현이 되었다고 홍보하며 이 사건 책임정찰제 특약과 책임수익 환급증서 등을 들어 피고가 추천하는 주식을 매매하면 최소한 7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불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 결제는 사기성 계약으로 할부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의 직원 N은 이 사건 제4계약의 체결을 유도하며 할부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가 카드정보를 알려주었더니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의 대상에 해당하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추천한 주식을 매매하고도 가입기간이 지나도록 목표수익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손실을 보게 되자 2021. 6. 15.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에 대하여, 2021. 12. 22. 이 사건 제5계약에 대하여 각 해지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금액 전액인 84,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등 참조).

(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호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등 참조).

(다)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투자자문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구 자본시장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특정'이란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개별성, 특히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라고 소개하였다거나, 원고와 1:1 상담 또는 자문을 통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등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투자자문을 약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제1호에는 피고가 '투자 정보 제공업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투자정보의 요청 또는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② 실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게 단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식의 매매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였을 뿐이고(을 제10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자문업체가 할 수 없는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수익률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제시한 자료는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제공 받은 증권정보에 관한 원고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두고 1:1 상담 또는 자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차별화된 1:1 상담 또는 자문이라고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은 원고의 상담 문의에 대해 1:1로 개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를 통한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을 제7호증 3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원고의 개별적인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투자목적, 재산규모, 투자경험 등에 맞추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면서 직접적으로 7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불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정보를 제공받아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과장되었거나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이 사건 책임정찰체 특약이나 책임수익 환급증서의 내용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내용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마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주식투자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아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해 없이 큰 수익만 보장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홍보나 위 책임정찰체 특약 및 책임수익 환급증서를 믿고 착오에 빠져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제1호는 "회사는 투자 정보 제공업체로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투자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원고에게 전화로 이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을 제8호증). 원고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종목을 지목한 것 외에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가입금액의 일부를 할부로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의도적으로 할부결제가 불가능함에도 할부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에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속에는 가입기간 중 임의해지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임의해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임의해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은 가입기간 중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에 대하여, 2021. 12. 22. 이 사건 제5계약에 대하여 각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1. 6. 15. 피고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해약해도 되죠?"라고 물었을 뿐 그 이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22. 1. 6. 피고의 직원에게 'M만 보겠다'고 하며 나머지 계약의 일시정지를 요청한 점,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2. 6. 16.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의 일시정지 및 연장을 요청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이 2022.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의 가입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3, 4계약은 정지 중으로 아직 가입기간이 남아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3, 4계약은 2022. 9. 22.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G(H)	2021. 3. 30. ~ 2022. 3. 31.	2021. 9. 23. ~ 2021. 11. 15. 2022. 1. 6. ~ 정지 중	228일
I	2021. 4. 1. ~ 2022. 4. 4.	2021. 9. 10. ~ 2021. 11. 15.	369일(만료)
J	2021. 4. 19. ~ 2022. 4. 20.	2021. 9. 10. ~ 2021. 11. 15. 2021. 11. 22. ~ 정지 중	150일
K(L)	2021. 6. 18. ~ 2022. 1. 18.	2021. 9. 23. ~ 정지 중	97일
M	2021. 12. 21. ~ 2022. 3. 22.	없음	92일(만료)

(2) 가입대금의 반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3, 4계약이 2022. 9. 22.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된 사실, 위 각 계약의 제4조는 계약해지 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이용료(= 1일 이용금액 × 서비스 이용일수)와 환불수수료(= 가입대금 ×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불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환불액 = 각 가입대금 - 1일당 이용료1) × 서비스 사용일수 - 각 가입대금 × 0.1, 금액은 원 단위 기준, 원 미만 버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환불금 합계 19,821,2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H)	30,000,000	367일	81,743	228일	8,362,596[=30,000,000-18,637,404(=81,743×228)-3,000,000]
J	15,010,000	367일	40,89	150일	7,374,150[=15,010,000-6,134,850(=40,899×150)-1,501,000]

G(H)	30,000,000	367일	81,743	228일	8,362,596[=30,000,000-18,637,404(=81,743×228)-3,000,000]
	0		9		]
K(L)	9,100,000	215일	42,325	97일	4,084,475[9,100,000-4,105,525(=42,325×97)-910,000]
합계	19,821,22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회경

판사윤정인

판사유성혜

1) 각 가입대금 ÷ 가입일수. 가입일수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시작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가입기간의 일수이다.